#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1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준혁ㆍ이수진ㆍ이기헌

안규백 • 강유정 • 박희승

권칠승 · 김동아 · 모경종

윤종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생길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함.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203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740개의 설 립 계획이 있음.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으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 역이나 용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 들어 학교신설이 어렵게 되고, 학교 신설 비용을 조세로만 부담할 경 우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세금이 개발사업 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투입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 생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정책적인 필요는 인정됨.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교 3년 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0년 개교예정(2027년 용지매입)인 학교까지 기존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2031년 개교예정(2028년 용지매입)인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2028년에도 용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임(안 제5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의4 및 제5조의5로 하고, 제5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2
-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만분의 3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공고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

정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5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
	지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
	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따라 산정한다.</u>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2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
	<u>만분의 35</u>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4(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생 략)	(현행 제5조의3과 같음)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제5조의5(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설치) (생 략)	계의 설치) (현행 제5조의4와
	같음)